

내과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질의응답

문1 학술대회 제1발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 ↪ 초록집의 표지(학회명, 일자, 장소 등이 명기되어야 함)와 수록된 초록을 함께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2 연수 시행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부칙에는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 ↪ 연수교육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부칙에 표기된 시기는 규정이 발효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문3 제4조 2항의 15평점은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만 입니까?

학술대회도 포함됩니까?

(*제6조 2항은 학술대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분과전임의 1년간의 수련기간 중 10평점이상의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각 분과위원회는 최소한 15평점이상의 연수 강좌 및 실습교육을 개설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5평점은 연수강좌와 실습교육만이고 학술대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4 분과전문의자격인정 시험 논문 제출 시 종설, Letter, 임상화보 등도 논문으로 인정되는지요?

- ↪ 분과전문의자격인정 시험 시에는 원저 및 종례를 제외한 논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종설(의학논평 포함)은 자격갱신 시 논문제출 평점으로 인정 됩니다.

문5 논문 평점 계산 방법은?

☞ 논문에 대한 평점인정은 분과규정집 별표2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논문(원저) 1인 단독 10평점, 2인 공저 7평점, 3인 공저 5평점,
4인 이상 3평점으로 계산. 공저인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가산점수
2평점, 논문(종설 및 증례보고)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
예) 4인 이상 원저 논문의 1저자인 경우: 4인 이상 3평점

1저자 2평점 포함하여 5평점 인정

종설 및 증례는 50%인 2.5평점 인정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질의응답

문1 전임의 수련 시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동시 수련을 금지시킨 것인지 또는 2분과 이상의 전임의 수련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 제9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제1항의 타 분과의 중복수련금지는 동시에 2 분과 이상의 전임의 수련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내과분 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 응시자격 제1항에 의거 1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수료 후 1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만이 응시자격이 있으므로 이 실무기간 중 타 분과의 전임의 수련을 받을시 이 기간 역시 중 복수련으로 인정되어 실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2 개업을 하다가 분과전임의 수련을 받고자 하는 내과전문의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 제9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한 후에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3 순환기분과 전임의의 별표 3의 수련내용을 보면 논문점수를 16평점이상 취득하여야 되는데 수련기간인 1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하는 것인지 실무 기간이 포함된 2년 이내인지요?

- ☞ 별표 3의 서두에 밝힌 공통기준에서 논문 제출기간은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이므로 이에 준하는 것입니다.

문4 군복무를 국군통합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군통합병원도 전임의 수련 병원으로 지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군복무중 정규수련을 마칠 수 있는지요?

☞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제2항 관계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군통합병원도 전임의 수련병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 복무중 내과분과전문의 수련은 제9조 겸직 및 중복 수련금지에 의거 국방 의무로 복무중인 자는 내과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으나, 국방의무가 아닌 장기 복무 시는 가능합니다.

문5 대학병원에서 전임의 수련 기간 중 4개월을 전임의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분원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규수련 1년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제6조 수련과정 제2항 관계 별표 3에 명시된 타과파견 이외의 비교육적 파견근무는 수련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 관리위원회에 보고 된 교육지도자가 장기해외연수나 근무 시 이동 등으로 수련병원에서 장기간 봉직치 못한 경우 당연히 해당 전임의 수련을 인정치 않게 됩니다.

문6 군제대후 5월부터 수련을 시작한 전임의는 다음해 4월말까지 수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속 수련병원의 인사규정상 매년 3월 1일을 신규 또는 근무연장일자로 시행하고 있어 2개월을 더 근무키 위해 3월에 다시 수련연장신청을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요?

☞ 군제대후 내과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경우에 준한 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7 전임의 수련 시 출산 및 병가로 인한 휴가 기간은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 출산 및 병가로 인한 휴가 기간은 해당 병원의 규정에서 정한 만큼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합니다.

문8 전임의 수련 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수련 기간 이외의 수련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 분과전임의 수련 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로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병원의 전임의 정원과 사유를 확인 후 관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검토 후 예외로 인정 가능합니다.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 및 간호사에 관한 질의응답

문1 '94년 2월 내과전공의 과정 수료 후 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1년 뒤 재검을 받게 됨에 따라 '95년 2월 군 신체검사에서는 합격되어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98년 4월 제대 후 신생 대학병원 알레르기내과 전임강사로 발령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 제대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해당내과에서 1년간의 분과전문의 정규수련과 함께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문2 '95년 2월 내과전공의 과정 수료 후 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내과분과전문의 정규수련을 1년간 받고 '96년 2월 군 신체검사에서는 합격되어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 의무 군복무 기간이라도 실무종사에는 해당되므로 '97년 7월부터 실시되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문3 '95년 내과전문의 취득과 함께 1년간 정규수련을 받은 후, '96년 3월부터 1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외연수 후 '97년 7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다시 말해서 해외연수 기간을 실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 실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문4 현재 수련병원 스텝으로서 호흡기내과 분과전문의입니다. 향후 필요에 따라
감염내과 분과전문의도 취득하고 싶은데, 두 가지 분과전문의를 모두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서류심사에 의해 두 가지 분과전문의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서류심사 시기인 1998년 10월 이전에 기존의 분과전문의를 포기한 후에
새로운 분과전문의 서류심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하고자
하는 새 분과에서 정규수련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분과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정규수련과 함께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문5 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 시 60세 이상 평점 취득 및 갱신관련 의무를 면제
한다는 규정에서 60세 이상 회원이 자격갱신을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 별지 제16호 서식 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